

보도	2026.7.15.(수) 14:00	배포	2025.7.15.(수)
담당부서	감사인감리국 감사인감리총괄팀	책임자	국 장 최창중 (02-3145-7860)
		담당자	팀 장 강대민 (02-3145-7862)
			선 임 고보성 (02-3145-7871)

「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」 개최

I 개 요

-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「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」를 '26.7.15.(수) 개최하였음
- 주권상장법인 감사인(회계법인)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및 품질관리 감리 결과 미흡사항, 개선권고 사항을 공유하고 상장사 감사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*하는 한편,
 - * 감사시간 관리체계, 감사보수 산정체계 등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자체 점검을 당부
- K-IFRS 제1118호 주요 내용,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 및 2026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등 감사품질관리 업무와 밀접한 내용을 안내하여 품질관리 담당자의 역량을 제고

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요

- ☑ 일 시 : '26.7.15.(수) 14:00 ~ 16:00
- ☑ 장 소 :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
- ☑ 대상자 :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,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등

📎 (붙임) 2026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세부 일정 참조

II

주요 설명내용

1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

- '24사업연도 품질관리수준 평가 결과* 발견된 주요 미흡사례를 안내하여 품질관리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을 제고

* 계량평가 결과가 우수한 회계법인에게는 감사인지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, 비계량평가(감사인감리) 결과 품질관리기준 미준수 시 페널티를 부여

'24사업연도 품질관리수준 평가 개요

- ☑ (대상 회계법인)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도록 등록된 회계법인*(주권상장법인 감사인)

* 계량지표는 전체 39사, 비계량지표는 '25년 중 감사인감리를 수행한 10사에 대해 평가

- ☑ (대상 사업연도) 회계법인의 '24사업연도('24년 중 개시한 사업연도)

- ☑ (평가항목) 계량지표 23개(65점 배점) 및 비계량지표 11개(35점 배점) 항목

2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 사항

- '25년도 품질관리 감리 결과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권고 내용*을 안내하여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당부

* (보도자료)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합니다('26.6.2.)

품질관리 감리 결과 처리 절차 개요

- ☑ (처리절차) 품질관리제도의 구축 및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확정

- ☑ (외부공개) 개선권고사항이 확정되면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*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'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', '경영상 비밀', '경미한 개선권고'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공개

*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접속 후, 「업무자료 - 회계 - 회계감리 -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등」 메뉴에서 회계법인별 개선권고 사항을 조회 가능

3 K-IFRS 제1118호 주요 내용

- K-IFRS 제1118호*(재무제표 표시와 공시)의 시행에 앞서 기준서 주요 내용 및 도입 영향에 대한 사전 주식공시 모범사례 등을 설명

* '25.12월 제정·공표되었으며, '27.1.1.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하고 조기 적용 허용

K-IFRS 제1118호 주요 내용 요약

- ☑ (손익분류)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, 투자, 재무 등의 범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영업손익,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및 당기순손익의 표시를 의무화
- ☑ (영업손익) 영업손익을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하는 현행과 달리 모든 수익과 비용 중 투자·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정의하여 영업손익 개념이 변경

4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

-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공유하여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감사인의 역할*을 당부

* 외부감사(외부감사인)는 내부감사(감사위원회·감사), 회계감리(당국)와 함께 회계부정 방지를 위한 3중 회계감시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

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요약

- ☑ (엄정제재) 고의 회계분식에 대한 과징금 확대, 회계부정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증액 부과, 회계부정 실질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등
- ☑ (감시강화) 내·외부감사, 당국 심사·감리 방해시 엄정 문책, 회계부정 예방 노력에 비례한 제재감경 적용, 교체 경영진의 신속 조사·정정시 제재 감면

5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

- '26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충실한 외부감사 수행을 당부하기 위하여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*을 안내

* 금융감독원은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·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('13년)한 이후 매년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선정·공표하고 있음

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

- ☑ (국외 매출·매출채권)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국외 매출을 객관적 증빙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적정하게 인식하고,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합리적으로 측정
- ☑ (재고자산 평가손실) 변동하는 시장환경을 반영하여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 평가하고, 저가법에 따라 적정하게 회계처리
- ☑ (투자부동산) 보유 목적에 따라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(유형자산·리스)을 명확히 구분하고, 공정가치 등 관련 정보를 주석에 충실하게 공시
- ☑ (충당부채·우발부채) 변화하는 시장환경을 고려하여 충당부채·우발부채를 누락없이 인식·공시하고, 충당부채는 최선의 추정에 근거하여 신뢰성있게 측정

III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

- **(기대효과)**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직접 감독 이슈 및 미흡사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함에 따라

- 상장법인 감사인의 감사품질관리 역량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- **(향후 계획)** 부실감사 위험*이 높은 재무제표·감사보고서에 대한 심사·감리 및 관련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감리를 실시하는 한편,

* 비정상적으로 낮은 감사보수, 합리적 사유없이 감소한 감사시간 등

- 감사품질이 우수한 법인에 대해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“감사품질 위주”의 지정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